

석유판매업(일반대리점·용제대리점) [] 등록신청서 [] 조건부 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청인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
	상호	전화번호
	사업자등록번호(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)	
	주된 영업소의 소재지	

보유시설	저장시설	소재지		
		용량		

취급 유종

사업개시 예정일

년 월 일

기타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1항·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·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(일반대리점·용제대리점) []등록 []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확인사항	수수료
1. 사업계획서(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공급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) 1부 2. 투자내용 확인 서류(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3.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(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1부 4.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(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1부 ※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및 제출	→	접 수	→	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	→	등록자격 여부 결정 및 결재	→	등록증 작성	→	등록대장 기재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한국 석유관리원		한국 석유관리원		시 · 도		시 · 도		한국 석유관리원		